

군포도시공사 제2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정관」 일부개정정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 군



2023년 3월 28일

군포도시공사 정관 제 8 호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

군포도시공사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(임원의 직무) 제3항 중 “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”를 “직제규정에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미 래 기 획 부
입 안	직 위 성 명	미 래 기 획 부 장 한 대 희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성 용 현
자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양 수 (3 9 0 - 7 6 1 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임원의 직무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사장이 유고시에는 <u>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</u>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12조(임원의 직무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직제규정에 ----- ----- 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